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95. 12. 22.

산업건설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5. 12. 8. 삼척시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5. 12. 8.

다. 심사일자 : 제10회 삼척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95. 12. 22) 심사.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사회과장 김명기)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주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견전한 지역사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재가 복지봉사센타등을 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삼척시 종합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타법인에 위탁운영만 가능하였으나,

○ 수탁자의 부실운영등 문제점 발생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 및 직종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별첨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성용)

지금까지 삼척시 종합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자비 복지원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수탁받은 복지법인의 운영비 자부담금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중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사업비 투자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복지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므로써,

공무원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인건비 절감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확대하므로써,

충실한 복지사업 수행과 주민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에 의해서만 운영토록 규정된 당초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과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복지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등 개정조례안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운영하거나 직영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이며, 예산수지 분석을 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시에서 지원금으로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비원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 약 1,700만원중 현재까지 9백만원정도 부담하고 8백만원은 미부담하고 있는상태임.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점을 감안할때 공무원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지분석 관계는 현재 결산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시 공무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홍보방안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명 활용 예정으로써, 관장, 경리, 운전기사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운영은 현재 위탁운영과 같이 하고, 다만 재정관계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